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8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정점식・임이자・박덕흠

송언석 · 김용판 · 조경태

추경호 • 조수진 • 서일준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평가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 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 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성계획"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를 "문화도시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등에"로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도시 지정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②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③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	
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	
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지방자치</u>
	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
	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
	<u>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5
자치단체의 문화도시 <u>조성계획</u>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에 따른 예비사업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
	항에 따른 문화도시로 지정을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 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 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 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문화도시의 지정, 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등에-----